

# 진보의 요람,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 제15차 단대운영위원회 안건지

일시 : 2020. 4. 28 화 오후 7시  
장소 : 줌

### ■ 참석단위 ( / 12)

출석 현황	회장 <input type="checkbox"/>	부회장 <input type="checkbox"/>	시반 <input type="checkbox"/>	약반 <input type="checkbox"/>	알반 <input type="checkbox"/>	일치반 <input type="checkbox"/>	불꽃반 <input type="checkbox"/>
	나침반 <input type="checkbox"/>	한길반 <input type="checkbox"/>	한음반 <input type="checkbox"/>	겨레반 <input type="checkbox"/>	꿈반 <input type="checkbox"/>	비반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대리인 :						
및 참관인	참관인 :						

\*결위 : 비반

### 들어가며

과제는 참으로 많네요. 전 요즘 코딩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말만 재미이지, 지옥과 같습니다.

## 제38대 사회대 학생회 제15차 단운위 안건목록

### ■ 보고 안건

-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 논의 안건

- 논의안건 1. 청년학생주거권보장을 위한 낙원구 행복15길 제안 인준의 건  
논의안건 2. 학생회비 사용의 건

기타안건.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입장문 관련하여 의견 조사의 건

### ■ 보고 안건

#### 보고안건 1.

####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14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4월 21일)

### ■ 보고 안건

- 보고안건 1. 전차 사회대학생회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전차 단과대 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 논의 안건

- 논의안건 1. 집행위원 인준의 건-**만장일치 인준**  
논의안건 2. 학생회비 사용의 건-**만장일치 인준**

기타안건.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입장문 관련하여 의견 조사의 건

#### 보고안건 2.

#### 전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보고안건>

2. 혐오 표현 규탄에 관한 성명서 수정안 작성 보고

<논의안건>

### 1.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단 호선의 건-**만장일치 인준**

- 제62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무산으로 인해 총학생회는 계속해서 연석회의가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현재 총학생회 업무가 과중하기에, 의장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의장단을 호선하고자 하니, 지원하실 운영위원분들께서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9차  
단과대학생회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4월 19일)

관련 총학생회칙

### 제10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개정 2010.09.07. 2013.05.31.>

제71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문구수정 2010.09.07.]

- ①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상황인 동시에 제 55조 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단과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 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06.09.29.>

②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총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및 각호신설 2013.05.31.>

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0000(해당년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0000(해당년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한다. 당해 12월 1일부로 다음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총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같음한다.

3. 제11장에서 규정하는 산하기구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③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의원 중에서 의장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각호신설 2013.05.31.>

1. 의장은 상설직으로, 총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3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3월 선거의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공대 의장. 자전 부의장.

## 2.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의 건-만장일치 인준

수신 : 2020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발신 : 미술대학 학생회장 하규원  
음악대학 학생회장 김서정

안녕하세요. 음악대학 학생회장 김서정, 미술대학 학생회장 하규원입니다.

이번 비대면강의 지침으로 인해 음·미대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은 전공 특성 상 대면이 필수적입니다. 수합한 바에 의하면 미술대학의 대부분 전공 강의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음악대학의 실기 강의들은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영상 업로드 후 피드백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온전한 수업효과를 누리기에 역부족입니다. 또한 음악대학 연습실과 미술대학 실기실이 폐쇄됨에 따라 학생들은 교육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각 단과대학생회회는 개선안을 연구하며 단과대 학장단과 계속해서 소통하였으나 임시방편만이 제시됐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대학과 미술대학 학생회는 학교 측에 온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 등록금 보상 요구 TF'를 결성했습니다.

TF에서는 각 단과대학과 본부에 학사행정 조율 요청서를 작성해 학사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첨 참고) 그러나 TF의 최종 목적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음·미대의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및 피해 사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입니다. TF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기획처장·학생처장·재정전략실장 및 기존 학생위원 3인에게 발송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대학, 미술대학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2. 정상적인 실기수업 불가에 따른 학생 지원 확대  
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  
나. 2020 학년도 1 학기 등록금 일부 이월(졸업예정자 한해 반환)  
다. 학생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 예산 확대
3.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출 내역 및 예산 공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등심위를 구성하는 학생대표 3인은 학부총학생회장·대학원총학생회사무총장·대자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기존 정기 등심위와는 다르게 음·미대에서 개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위해 미술대학 학생회장과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대자연)장을 등록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논의 부탁드립니다.

### [요청사항]

미술대학 학생회장과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대자연)장을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기획처장·재정전략실장, 학생 3명,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2명과 학부 또는 동문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학생처장·기획처장·재정전략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에 대한 위원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관련전문가 2명은 학교측과 학생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자로 하며 학부 또는 동문 위원은 학교측과 학생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관련전문가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총학생회 재구성 등 기타 사유로 총학생회 또는 학생처장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3. UnivExpo 주최 2020 대학생활 컨퍼런스 참여의 건-부결**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 2]

**4. 130주년 노동절 맞이 청년학생 기자회견 연명 및 참가의 건-축조심으로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 3]

연서명 부결, 기자회견 인준

**5. 낙원구 행복15길 참여의 건-축조심으로 인준**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 4]

가맹단위로는 부결, 연대단위 인준.

<기타안건>

1. 온라인선거플랫폼 개발비용 지불 방식 관련 토의

**보고안건 3.**

**사회대 집행위원회 보고**

- 인권사회팀 : 나의 이야기 프로젝트 업로드가 끝났고,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문화자치팀 :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생활복지팀 : 학사일정 달력을 공지했고, 전공책 중고장터 카페를 홍보했습니다. 온라인 간식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고안건 4.**

**각 단위 보고**

- 꺼지지 않는 진보의 횃불, 경제A/불꽃반
- 전진하는 바리케이드, 경제B/飛반
- 사랑과 꿈이 넘치는 경제C/始반
- 해방사회 그날까지, 사회학과/惡반
-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중복지의 한길 사회복지/한길반
- 잠재된 무한의 가능성을 여는 우리, 심리/알반
- 시대와 공명하는 사람의 소리, 언론/꿈반
- 흔들림 없는 시대의 길잡이, 외교/나침반
- 하나의 소리를 향한 다양성의 고민, 인류/한음반

- 칠천만 민중의 창과 방패, 인민의 벗 정치/일치단결반

- 칠천만 겨레에 가슴으로 답하라, 승리하는 해방겨레 지리/겨레반

■ 논의안건

**논의안건 1.**

**청년학생주거권보장을 위한 낙원구 행복15길 제안 인준의 건**

- 이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별첨 1]